

문정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9.3.1.

제1차 개정 2011.9.1.

제2차 개정 2014.5.21.

제3차 개정 2015.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문정여자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교육목표는 “바른 심성과 비전을 지닌 미래의 창의적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으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문정여자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33으로 둔다.

제3장 수업 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의 시작일은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의 시작일은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기 간 수업 시

수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휴업일) ①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무일
7. 재량 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교중지) ①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전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1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두되,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 이수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제13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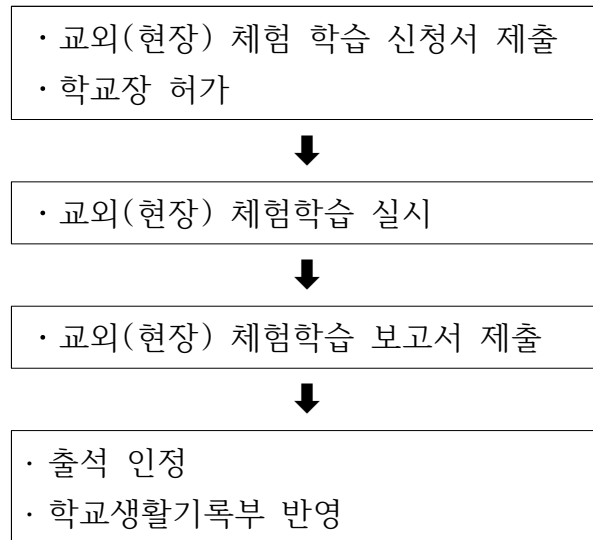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사·과정수료·졸업

제14조(교육과정)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 과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교외(현장) 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학교장은 정기교사 등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라 실시되는 교외(현장)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외(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개별 체험학습,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국내·외 교류학습(현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부모가 1주일 이내의 국내·외 개별 교외(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할 수 있으며, 학기당 1회씩, 2회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 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 학교의 생활 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4. 교외(현장)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교외(현장) 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교외(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허용기간을 해당 교외(현장) 체험학습 기간으로 할 수 있다.
5. 교외(현장) 체험학습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 2~3일 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출석 수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외(현장) 체험학습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7. 기타의 교외(현장) 체험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교육)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학습, 적성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1주~3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 교육 희망 학생 (취학 면제 및 유예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이수 및 가정 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 학생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③학교의 장은 위탁 교육 기간에 대해 학교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 대상자의 학적 관리, 성적 처리 등 기타 학사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의한다.
- ④학교의 장은 취학 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 교육 및 가정 학습의 징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절차를 통해 위탁 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운영,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감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출·결석) ①본교의 출·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②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며 보호자 또는 보건 교사, 학급 담임 교사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18조(고사) ①고사는 학기별 지필 고사(1차, 2차)와 수행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업 성적 평가 관리나 고사 시 부정행위자의 처리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20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21조(입학시기) ①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2조(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코자 하는 자는 내신 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전·편입학) ①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
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방법은 광주광역시 귀국자 특별 입학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
을 받아 본교의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
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까지만 가능
하다.

제26조(자퇴) ①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따라 스스로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 이상 21일 이내
의 숙려 기간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려 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 Wee 센터, 금란교
실,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 소견서를 자퇴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
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 인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보증인) ①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
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제31조(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본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이수 인정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따른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2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①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은 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행한다.

③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며 이 규정은 ‘붙임 1’로 정한다.

제8장 수업료 등

제33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 지침에 의한다.

제35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6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생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

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학칙 개정 절차

제39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⑤ 학교의 장은 제36조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붙임 2’로 제시한다.

제40조(위임 규정) 이 학칙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4.5.21. 개정)부터 적용한다.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5.3.1. 개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문정여자고등학교장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문정여자고등학교장

학 교 장
직 인

교외(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개별학습, 국내·외 교류학습 등 포함)

		계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인적사항	성 명	(여)	학년반	학년 반
	주 소		전 화	
학습기간				
장 소				
학습계획				

위와 같이 개별 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

학부모 : (인)

문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교외(현장) 체험 학습 시행 절차】

① 신청서
제출
(학교장 승인)

→

② 현장 체험
학습 실시

→

③ 현장 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현장 사진이나 여행지
지도 등 첨부)

→

④ 출석으로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교외(현장)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1. 주제 설정 이유
가.
나.
다.
2. 준비물 :
3. 교통 :
4. 함께 한 친구 :
5.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가.
나.
다.
6. 주요 학습 내용
가.
나.
다.
7. 평가(성찰)
가.
나.
다.

【붙임 1】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문정여자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장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제5조(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4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7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3장 조기 진급 · 조기 졸업 평가

제8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10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전에 실시한다.

제11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12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14조(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5조(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장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제16조(신청 시기)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호와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

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18조(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17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대학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대학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0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5장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제21조(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22조(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3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25조(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26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